

-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 (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 하여 10일전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 4. 그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30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